

안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8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통장의 임무를 재정립하고, 동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을 규칙으로 위임함(안 제4조).
- 나. 통장의 연령제한 규정을 새로이 정하고 거주요건 등 위촉요건을 명확히 정함(안 제5조).
- 다. 통·반장의 임무를 시대변화에 맞추어 재정립함(안 제6조).
- 라.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통장증 발급 규정을 신설함(안 제9조).
- 마. 통장의 재위촉과 우수통장 표창 등을 위하여 통장활동평가 규정을 신설하고, 우수통장에 대하여는 우수사례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 예고 결과 : 의견있음(별첨)

- 입법예고 : 2004. 10. 20. ~ 11. 8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타 지방자치단체 통·반구역 설정규정 현황
- 연령 분포 및 타 지방자치단체 연령제한 현황

안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통·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별표와 같다”를 “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신원사항과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통장을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지역에는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.

1. 공단지역

2.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

3. 적임자가 없어 1회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

④통장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되어 그 통의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⑤반장은 그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규정은 반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

제5조의2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며,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임기중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(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)하였을 때

4.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

5. 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때

제6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제9호를 동조제11호로 하고,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마을(통)주변 환경정비(청소, 재활용 지도 및 분리수거 용기 관리, 불법광고물 제거,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 확인 등)
9. 각종 불법행위 계도 및 신고
10. 각종 봉사활동 지원 및 참여(청소년 보호활동, 방범활동 지원, 어려운 이웃 기초조사 및 지원, 학생봉사활동 지원 등)

제9조의 제목 “편의제공” 을 “편의제공 및 통장증 발급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동장은 통장이 제6조 규정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, 제1항의 편의제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통장활동평가) ①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.

②동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재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통장에게 표창 및 우수사례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별표 “통·반 명칭 및 관할구역” 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시기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 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종전 통장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통장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연령에 관한 제한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한 새로운 임기의 만료후 1회 재위촉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소 관 과		주민자치과
입 안 자	과 장 직위·성명	주민자치과장 임 철 웅
	담 당 직위·성명	주민자치담당 전 종 옥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엄 태 복 (행정 3447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명칭 및 관할구역) 통·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<u>별표와 같다.</u>	제4조(명칭 및 관할구역) ----- ----- 규칙으로 정한다.
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(생략) ② <u>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신원사항과 주민 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통·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. 단, 공단지역은 공단내 사업체 근무자로 위촉할 수 있다.</u>	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신원사항과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통장을 위촉하여야 한다.</u> <u>다만, 다음 각호의 지역에는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.</u>
③ (생략) <u>〈신설〉</u>	1. <u>공단지역</u> 2. <u>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새로 입주하는 주거지역</u> 3. <u>적임자가 없어 1회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</u>
<u>〈신설〉</u>	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통장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되어 그 통의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u> ⑤ <u>반장은 그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규정은 반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</u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해촉) 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통·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임기중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사실상 전출하였을 때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수행 상 태가 지극히 불량할 때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5조의2(통·반장의 해촉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임기중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(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)하였을 때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</u></p> <p>5. <u>통·반을 통합하거나 폐치하는 때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<p>제6조(임무) 통·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주민의 거주이동 사항 파악과 통·반적부 관리</u></p> <p>4. <u>각종 사실확인</u></p> <p>5. <u>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및 지원</u></p> <p>6. ~ 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9. (생략)</p>	<p>제6조(임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5. <u>마을(통)주변 환경정비(청소, 재활용 지도 및 분리수거 용기 관리, 불법광고물 제거,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 확인 등)</u>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각종 불법행위 계도 및 신고</u></p> <p>10. <u>각종 봉사활동 지원 및 참여(청소년보호 활동, 방범활동 지원, 어려운 이웃 기초조사 및 지원, 학생봉사활동 지원 등)</u></p> <p>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편의제공) (본문 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9조(편의제공 및 통장증 발급) ① (현행 본문과 같음)</p> <p>② <u>동장은 통장이 제6조 규정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, 제1항의 편의제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12조(통장활동평가) ① <u>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동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재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통장에게 표창 및 우수사례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2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 <p><u>〈별표〉 통·반 명칭 및 관할구역 (제4조 관련)</u></p> <p>(표 생략)</p>	<p>제13조(시행규칙) (현행 제12조와 같음)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

□ 입법예고 결과

- 입법예고기간 : 2004.10.20. ~ 11.8.(20일간)
- 의견제출 : 1건
- 제출일시 : 2004.10.27.
- 제출자 : 사2동 정 ○ ○
- 의견내용 및 처리결과

견의내용(요약)	처리 의견	처리사유
○ 현 2년 임기를 주민을 위하여 현저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1회 연장(단, 기간이 끝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임자가 없을 시는 1회에 한하여 재선임)	반영 불가	○ 통장활동평가제를 도입(조례제12조)하여 평균점수 60점 이하인 자는 재위촉 금지 조항을 규칙에 넣어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통장의 연임 방지 예정.
○ 아파트의 경우 공고문에 따라 선임자를 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하고, 주택지역은 반장들이 반상회를 통하여 통장 후보자 선출	반영 불가	○ 선출의 공정성 확보가 불가능하여 선출제도를 도입치 않았으며, 적임자가 없을 시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음
○ 4년이상된 통장은 전원 해촉하고, 2년 이하인 통장은 2년 더 재선임	반영 불가	○ 통장평가제를 도입하여 무능력자는 재위촉되지 않도록 하고, 연령제한(30세이상 65세이하)을 두었음
○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선출, 장기집권 방지 요망	기반영	○ 통장활동평가제, 연령제한, 공개모집 제도 등을 두어 객관성, 공정성 확보
○ 임기만큼은 정확한 기간을 요함	반영 불가	○ 통장 재위촉시 통장활동평가를 고려하도록 임기규정을 보완하였음
○ 반장한테도 적은 수당이라도 지급 요망	기반영	○ 연간 5만원씩 지급(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)

안산시통·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

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287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4. 12. .
제 안 자 : 의회행정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통장활동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, 통장의 연령제한 및 통장증 발급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주 요 골자

- 통장 연령을 “30세이상 65세 이하로” 규정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함(안제5조)
- 통장의 임무를 재조정함(안제6조)
- 통장증 발급 조항 삭제(안제9조)
- 통장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고, 우수통장에게 표창 및 우수사례 비교시찰 내용을 삭제함(안제12조)

안산시통 ·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통 ·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중 “30세이상 65세이하인”을 삭제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임무) 통 · 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지도 및 계도
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보고
3.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
4.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(전시에 한함)
5.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(전시에 한함)
6.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규칙으로 정하는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편의제공)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제12조제2항중 “반영하여야 한다”를 “반영한다. 다만, 평가기준 및 방법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로 하고,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 표

원 안	수 정 안
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	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
① (생략)	① (원안과 같음)
② 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<u>30세이상 65세이하인</u> 자로서 신원사항과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통장을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지역에는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 및 연령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.	②< 삭 제 >
1.~3. (생략)	1.~3. (원안과 같음)
③~⑤ (생략)	③~⑤ (원안과 같음)
제6조(임무) 통·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	제6조(임무) 통·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주민지도	1. 주민지도 및 계도
2. 행정시책의 홍보의 주민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	2.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보고
5. 마을(통)주변 환경정비(청소, 재활용 지도 및 분리수거 용기 관리, 불법광고물 제거, 공공시설물의 관리실태 확인 등)	3.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
6.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	4.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(전시에 한함)
7.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(전시에 한함)	5.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(전시에 한함)
8.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(전시에 한함)	6.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규칙으로 정하는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
9. 각종 불법행위 계도 및 신고	
10. 각종봉사활동 지원 및 참여(청소년보호 활동, 방범활동 지원, 어려운 이웃 기초조사 및 지원, 학생봉사활동 지원 등)	
11. 기타 법령에 부여된 업무 및 동해이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	

원 안	수 정 안
<p>제9조(편의제공 및 통장증 발급) ①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통장은 통장이 제6조 규정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고, 제1항의 편의제공을 받게하기 위하여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편의제공)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</p>
<p>제12조(통장활동평가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 통장은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재위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통장에게 표창 및 우수사례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통장활동평가)</p> <p>①(원안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반영한다. 다만,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i>< 삭 제 ></i></p>